

화학물질을 **제조·수입** 하고자 하시나요?

제조·수입 전
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

잠깐!

확인명세서 제출이행을

꼭! 확인하세요!



**법적
근거**

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



**제출
대상**

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 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

- 단, 제조의 경우 단일물질(화합물)에 한함
- ※ 제출제외 대상은 화관법 제3조(적용범위) 등 확인 필요



**제출
시기**

화학물질 제조·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제출

- 시험용·연구용·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 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 제출
- ※ 화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



**제출
내용**

화학물질 제조·수입자는 규제대상 화학물질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기재 및 제출

- 유해화학물질 및 기존/신규화학물질 해당여부 확인
- 화학물질명, 함량, CAS번호 등이 기재된 서류(성분명세서, LOC 등)첨부



**제출
방법**

전자민원시스템 이용 제출

- www.ols.kcma.or.kr(로그인 후, 서식작성 및 제출)

서면 제출(방문 또는 우편/등기 이용)

-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주소 :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34, 3층



문의처 :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확인제도팀(02-3019-6773~8)



환경부

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



세부사항 확인